

의안번호	2217536
의 회 인	박균택 의원
회 답 일	2026. 6. 19.
추계번호	26A146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의6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 및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1항) - 한국석유관리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 혼합·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 혼합·공급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그 밖에 혼합·공급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함(제7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7조의6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석유제품에 지속가능항공유를 혼합의무비율 이상 혼합하거나 지속가능항공유가 혼합의무비율 이상 혼합된 석유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혼합·공급의무자”)의 혼합·공급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관리기관 지정 대상 기관은 ①한국석유관리원¹⁾, ②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정안에 따라 혼합·공급의무 이행 확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 － 참고로, 한국석유관리원은 1983년 설립되어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시험, 유통관리, 수급·거래 정보 관리, 기술정보제공, 석유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874억원 규모(정부보조금 539억원 포함)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혼합·공급의무 관리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수반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향후 지정될 관리기관의 수, 관리기관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국가의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다만,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부는 2025년 9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비율 지정, 공급의무 대상 이행관리, 급유의무 대상 이행관리,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된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비율을 2027년부터 1%로 정하여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시행할 예정
 - 산업통상부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의 검증시설 구축, 품질·안전성 확보 검증·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산업통상부의 지속가능항공유 보급 및 기반 구축 관련 재정사업

세부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방법)	예산(백만원)	
			2025	2026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기반 구축(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5432-305)	(석유대체연료 검증시설 구축)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바이오항공유(SAF) 등)의 혼합량 확인, 불법 석유대체연료 판별 등 탄소함량 검증 장비(AMS) 도입 및 시험시설 구축(LCA 탄소감축 평가시스템 구축)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생산부터 연료 제조 및 유통, 소비 등에 대한 탄소감축 평가(LCA) 및 혼합량 등 확인 체계 마련 (신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안전성 확보) 신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안전성 실증 평가에 따른 품질기준 마련	한국석유관리원 (보조)	1,645	5,698

자료: 산업통상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